송도국제도시 M2블록 호반 써밋 송도 공동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9.3.28. 입니다. (청약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 임)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의한 성장관리권역이며,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 비청약과열지역으로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본 아파트는 1주택 이상을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민간택지(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에서 건설 ·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써, 「주택법」 제54조에 의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에 대한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본 제도는 이미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인터넷 청약[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KB국민은행(www.kbstar.com)]으로 진행되므로, 사전에 인터넷뱅킹을 가입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경우에만 특별공급은 견본주택에서,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하단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 · 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의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이를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접수종류의 구분없이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2,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2019.3.28.) 현재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2항에 의거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공급하고, 60%를 추첨제로 공급하며, 85㎡초과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8항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해당 주택수의 75%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나머지 25%는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남은 주택은 1순위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순으로 각각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이 때 1주택(분양권 등을 소유한 세대는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본 아파트의 입주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② 본 아파트의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 또는 「부동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을 받을 것
    ③ 본 아파트의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할 것
  - 1주택자가 위 요건 중 ②에 따른 신고 또는 검인을 받지 않은 경우 본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른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본 아파트의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3항 제1호의3 참조).
- 본 아파트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에 위치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서 청약 순위별로 공급 세대수의 50%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9.3.28.) 현재 인천광역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수도권 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에게 공급하며, 동일 순위 내에서 인천광역시 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 세대는 수도권 지역거주자에게 공급하고, 수도권 지역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 시에는 잔여물량을 각각 상기 거주 지역별 배분비율을 적용, 배분하여 차순위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청약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가 과거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 본 아파트 1순위 청약시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합니다.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 · 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남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1항 및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순위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hobansummit-sd.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 · 호수를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여할 [illegible]

[illegible]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주체	㈜인천송도엠투피에프브이 외 1	200111-0496054 외 1
시공회사	㈜호반건설	204711-0007384

■ 견본주택 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78-1
■ 사이버 견본주택 : www.hobansummit-sd.co.kr
■ 분양문의 : ☎ 1566-0662

1566-0662

시행 ㈜인천송도엠투피에프브이 시공 HOBAN 호반건설

견본주택 I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78-1